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755
----------	-------

발의연월일 : 2026. 7. 3.

발 의 자 : 권향엽 · 최민희 · 허성무  
강준현 · 송재봉 · 오세희  
이재관 · 김남근 · 백혜련  
소병훈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의 투표용지 교부 방식에 대하여 사전투표의 경우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하도록 한 후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해 인쇄·교부하는 방식으로, 선거일 투표는 선거인명부에 수기로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한 후 미리 인쇄·보관해 둔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규정함.

그런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참정권 침해 논란이 빚어지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부실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음. 현행 투표방식으로는 선거일에 투표용지가 부족할 경우 투표가 중단되는 등 신속한 대응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후보자 단일화 등의 사유로 사퇴하는 후보자가 있을 경우 사전투표일 전날까지 사퇴하면 사전투표용지에는 “사퇴”가 표시되지만, 선거일 투표용지에는 표시되지 않아 유권자의 투표가 ‘사표’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이에 사전투표의 투표용지 교부 방식을 선거일 투표 방식에 도입하여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투표일 전날까지의 후보자 사퇴 정보가 투표용지에 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참정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44조의2제1항 등).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제1항 중 “사전투표소”를 “투표소(사전투표소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후”를 “및 제155조제1항에 따른 투표시간 종료 후”로 한다.

제147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⑫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기 위한 선거전용통신망을 구축하여야 하며, 정보의 불법 유출·위조·변조·삭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1조제1항 중 “투표용지와 투표함은”을 “투표함은”으로, “작성하여 선거일”을 “선거일”로, “투표용지를 봉합하여 보관하였다가 투표함과 함께 투표관리관에게”를 “투표관리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사전 투표소”를 “투표소(사전투표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사전투표관리관이 사전투표소에서”를 “투표관리관(사전투표관리관을 포함한다)이 투표소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투표용지의 봉합·보관·인계 그”를 “그”로 한다.

제157조제1항 중 “제시하고”를 “제시하여”로, “후 선거인명부에 서명

이나 날인 또는 무인하고 투표용지를”을 “다음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후 투표용지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選舉日에 選舉人에게 投票用紙를 교부하는 때에는 私印捺印欄에 私印을捺印한”을 “투표용지 발급기로 선거권이 있는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투표관리관”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으로,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일련번호지를”을 “일련번호를”로, “교부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00枚 이내의 범위안에서 그 私印을 미리捺印해 놓은 후 이를 교부할 수 있다”를 “선거인에게 교부한다”로 한다.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인에게 투표용지가 교부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분증명서의 일부를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저장하여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185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선거에 관한 투표율 분석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표율 분석보고서에는 지역, 성, 연령, 투표소별 분석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⑤ · ⑥ (생략)

제147조(투표소의 설치) ① ~ ⑪  
(생략)

<신설>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① 투표용지와 투표함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여 선거일 전일까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며, 이를 송부받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투표용지를 봉합하여 보관하였다가 투표함과 함께 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⑤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인쇄·납품 및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는 과정에,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수

⑤ · ⑥ (현행과 같음)

제147조(투표소의 설치) ① ~ ⑪  
(현행과 같음)

⑫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기 위한 선거전용통신망을 구축하여야 하며, 정보의 불법 유출·위조·변조·삭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① 투표함은

선거일

투표관리관에게

② ~ ④ (현행과 같음)

<삭제>





때에는 私印捺印欄에 私印을捺印한 후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일련번호지를 떼어서 교부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00枚 이내의 범위안에서 그 私印을 미리捺印해 놓은 후 이를 교부할 수 있다.

③ ~ ⑧ (생략)

제185조(개표록·집계록 및 선거록의 작성 등) ① ~ ⑥ (생략)

<신 설>

거의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투표관리관”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일련번호를-----선거인에게 교부한다.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185조(개표록·집계록 및 선거록의 작성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선거에 관한 투표율 분석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표율 분석보고서에는 지역, 성, 연령, 투표소별 분석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